

의안번호	제560호
의결 연월일	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
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출 자	충청북도지사
제출연월일	2024년 4월 12일

법무혁신담당관 심사를 마칩

충청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560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24년 4월 12일
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사유

- 재정지원 부정수급 등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의 취소사유 발생시 처분 근거를 마련하여 기업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의 취소 사유 보완(안 제15조)

3. 의안전문 : 붙임

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

5. 관계법령 발췌 : 붙임

6. 비용추계서 : 붙임

충청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5조제1항제1호 중 “거짓 그”를 “거짓이나 그”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
중 “규칙에서 정한 지정요건”을 “지정요건”으로 하며, 같은 항에 제4호부터
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았거나 받으려고 하
는 때
5. 사업목적에 위배되는 결격사유가 발견되었을 때
6. 그 밖에 지정 취소의 사유가 발생한 때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5조(지정의 취소) ① 도지사는 예비사회적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</p> <p>1. <u>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</u> 지정을 받은 때</p> <p>2. <u>규칙에서 정한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</u></p> <p>3. (생략)</p> <p><신설></p> <p><신설></p> <p><신설></p> <p>② · ③ (생략)</p>	<p>제15조(지정의 취소) ①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<u>거짓이나 그</u> ----- -----</p> <p>2. <u>지정요건</u>----- --</p> <p>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<u>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았거나 받으려고 하는 때</u></p> <p>5. <u>사업목적에 위배되는 결격사유가 발견되었을 때</u></p> <p>6. <u>그 밖에 지정 취소의 사유가 발생한 때</u></p> <p>② · ③ (현행과 같음)</p>

관련법령 발췌

□ 사회적기업 육성법

제18조(인증의 취소)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면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.

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
2. 제8조의 인증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
3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재정 지원을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
4. 경영악화 등 사회적기업의 유지가 어렵다는 특별한 사유 없이 인증을 반납하는 경우

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에 대하여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 이 경우 실질적 동일성의 기준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.

④ 인증취소의 구체적 기준 및 세부 절차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.

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

□ 첨부제외 관련규정

- 「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1조제4항제1호

□ 사 유

- 충청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비사회적기업의 건전 운영을 위하여 지정의 취소사유에 대한 처분 근거를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서, 별도의 비용 발생 요인이 없어 비용추계서 작성제외사유에 해당함

□ 작성자

- 경제통상국 소상공인정책과장 임보열